

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[시행 2023. 1. 5.] [환경부령 제1020호, 2023. 1. 5., 타법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제정·개정문

전체 제정·개정이유

타법개정 제개정이유(보기)

【제정·개정문】

제정·개정이유

전체 제정·개정문

◎환경부령 제1020호(2023.1.5)

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

제1조 생략

제2조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·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1.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)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